

	<h2 style="margin: 0;">전산정보원규정</h2>	규정번호	3-7-29
		제정일자	2023.05.01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전산정보원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안산대학교 부속 전산정보원(이하 “전산정보원”이라 한다)의 업무 및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목표) 학사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학사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정보화된 교육 서비스를 위한 전산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목표로 한다.

제3조(업무) 전산정보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정보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
3. 대학 데이터베이스 관리
4. 대학 학사 운영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
5. 대학 행정 운영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
6. 보안 장비/시스템 운용에 관한 업무
7. 정보보안 교육/홍보/수준진단에 관한 업무
8.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업무
9. 대학 IT 인프라(서버, 네트워크 등) 유지 관리 업무
10. 기타 전산정보원 운영목표에 부합되는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전산정보원에는 전산정보팀을 두고 팀장과 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필요에 따라 조교, 근로학생 등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원장) ① 전산정보원장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대학이 정한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원장은 전산정보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전산정보원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 및 구성) ① 전산정보원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산정보원장이 되며,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 중 당연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1. 교무처장
2. 입학홍보협력처장
3. 학생성공처장

4. 산학협력처장

5. 전략기획처장

6. 행정지원처장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3항의 순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전산정보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주요사항

2. 전산정보원의 발전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전산정보원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
4. 전산정보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

제8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전산정보원의 재정은 대학 교비회계 및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전산정보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5 장 보 칙

제11조(규정변경) 전산정보원의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(세부사항) 전산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